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나760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결 2017. 5. 30.

판결 선고 2017. 6. 29.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538370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C, D, E, F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6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C, D,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6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의 전세자금 대출 경위

1)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제1심 공동피고' 부분은 생략한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일명 'T'이라는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재직 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는 '부천시 소사구 G B01호 우측'에 관하여 A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F로부터는 A가 'H'라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 교부받았다. 위 과정에서 C, E은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허위 주택전세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2) A는 2013. 3. 29.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에 있는 우리은행 목동역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 서류 및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5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3) 피고는 2013. 3. 29.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4) C은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5. 5. 21.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769호), A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150호).

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 1) 우리은행은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수탁기관 및 대출은행으로서 대출신청인인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보증인 A,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3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3. 29. A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A는 같은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그 후 A는 2014. 2. 21. 이자 연체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5. 3.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47,168,5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해 9. 25. A로부터 4,800원을 회수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2, 6, 9,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2. 11.경에도 D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인천 남동구 J 연립주택 나동 204호'에 관하여 K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던 점(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5. 8. 31.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82호)),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도 피고가 D를 통하여 A를 소개받아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우리은행으로부터 송금받은 전세자금 50,000,000원 전액을 곧바로 A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공모 내지 이를 방조하여 우리은행을 기망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계좌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대위변제금

47,163,700원(= 47,168,500원 - 4,8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황성광, 판사 송유림